

제405회 임시회

'22. 11. 23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## 3. 제안사유

- 현재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“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”이 “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”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존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
- 문해교육센터 지정·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

## 4. 주요내용

-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(안 제8조)
- 종전의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,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
- 문해교육 센터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)
- 평생교육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사업 변경(안 제15조)
-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등 포상 근거 마련(안 제16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“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”이 “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”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문해교육 센터 지정·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8조에서는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조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문해교육 센터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4조)하는 것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평생교육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사업 변경(안 제15조)에서는 「평생교육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
- 안 제16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등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시·도지사가 시·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